|  |
| --- |
| **CES 2024 카테고리별 단독부스 참가계약서** |

**제1조 (용어의 정의)** ①'전시회'라 함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(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박람회)을 말한다.②'협회'라 함은 CES의 주최기관인 CTA의 한국공식 에이전트이며 참가지원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를 말한다. ③'참가업체'라 함은 단독부스 참가신청 업체를 말한다.④‘위탁관리비’라 함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접수-승인-배정-계약-현장관리,장치,물류관리,디렉토리등록,츨입증등록,통역원알선 및 송금수수료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필요경비를 말한다.

**제2조 (참가비납부)** ①참가업체는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,관리수수료 등 참가비에 대하여 분할 또는 일시불 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분할의 경우 신청금은 인보이스 발행에 따라 3일 이내까지 납부,2차,3차,4차 등 납부기한 전에 방행된 인보이스에 따라 외화(USD)로 협회 외화계좌에 납부한다. ②2부스 이하 참가업체 장치가격은 협회가 우수 장치업체로부터 디자인을 제안 받아 선정하여 낙찰된 가격이 미국 물가인상으로 예정 장치비를 상회할 경우 추가 청구 또는 낮을 경우 반환한다.④참가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(부가세 영세율적용) 발행은 수납한 USD에 대하여 입금 시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여 영수로 발행한다.

**제3조(부스배정**)①카테고리별 단독부스는 신청업체로부터 계약서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주최측에 승인신청 후 승인에 따라 부스배정을 요청한다.②협회는 주최측이 배정가능한 도면을 신청업체에 전달하며 업체의 결정에 따라 주최측과 참가업체, 협회가 3자 계약한다. ③승인을 받았더라도 카테고리별 해당 관의 부스가 매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회는 납부한 참가비 전액을 반환한다.

**제4조 (참가신청 해지)** ①참가신청 후 취소에 따른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다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참가  구분 | 취소사유별 | 반환 대상 | | | 반환시기 및 비고 |
| 부스료 | 장치비 | 관리수수료 |
| 품목관별  독립부스 | ① 참가신청 후 신청금 납부전 취소시 |  |  |  | 수수료 별도납부 |
| ② 신청금 납부 후 승인신청 전 취소 시 | 100% | 100% | 0% | ‘24.4월말 |
| ③ 신청금 납부 후 주최측 승인심사 중 취소 시 | 100% | 100% | 0% | ‘24.4월말 |
| ④ 주최측 참가 불승인 통보 시 | 100% | 100% | 100% | 4주 이내 |
| ⑤ 배정받은 부스위치 불만족으로 취소 시 | 100% | 100% | 0% | ‘24.4월말(장치비는 2부스 이하업체 해당), |
| ⑥ 해당 카테고리 매진으로 부스배정이 안될 경우 | 100% | 100% | 100% | 4주 이내 |
| ⑦ 임차료 지정기일까지 미납 시(주최측 규정적용) | 0% | 0% | 0% | 2부스 이하 신청기업이 ‘23.9월 30일 이전 취소 시 장치비 100% 반환(’24.4월 반환) |
| ⑧ 참가비 납부 후 취소 시 | 0% | 0% | 0% |

② 자연재해,전염병 등으로 전시회 취소 시 부스임차료는 주최측 정책에 따라 적용하며 관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부스임차료는 신청 시 20%, 중도금 40%(2023.5.26.일),잔금 40%(2023.9.8.일) 납부에 있어 중도에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스임차료는 반환 불가하며, 중도금 및 잔금은 주최측 인보이스가 발행된 이후 취소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.

④ 2부스 이하 신청업체가 장치비를 납부하고 ‘24.9.30일 이전에 참가 취소 시에는 장치비를 반환하나 ’24.10.1일 이후 취소할 경우 이미 협회가 장치업체와 계약 완료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다.

⑤ 협회에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협회가 계약서에 날인 후 참가업체에 신청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참가를 취소할 경우 관리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한다.

**제5조 (부스장치공사 및 물류,출장이용)** ① 개별부스 2부스까지 신청업체는 협회 지정업체가 장치를 시공하며 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장치변경,특수집기 등이 추가될 경우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단 4부스 이상 참가업체는 협회 협력업체 또는 자율로 시공한다.②전시품 운반 및 단체출장은 협회가 경쟁하여 지정한 한 업체를 이용하거나 업체의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협회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였으나 분쟁이 발생될 경우 협회는 참가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 등 노력해야 한다③통역은 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알선하며 통역비는 업체가 부담한다. 단 협회가 통역원을 매칭 후 취소할 경우 통역비 총액의 50%를 패널티로 협회에 납부하며 협회는 통역원에게 지급하고 입금증 또는 영수증을 참가업체에 제공한다.

**제6조 (기 타)** ①협회는 주최측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업정보 등 세부사항을 주최측에 제공할 수 있다. ②협회는 참가업체가 수출바우처 및 지원기관의 참가비 정산을 위해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국고미지원확인서,부스 및 장치계약서 및 입금증 등 서류를 제공한다.

③참가업체는 CES 주관사 제반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.④참가업체는 부스에서 제품 등 도난방지를 위해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만약 도난 발생 시 협회는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 (계약서작성 및 해석)** ① 본 계약서는 참가신청업체가 서명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날인하여 참가업체 전송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.②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CES,참가업체,협회 등이 작성한 계약서 및 해외전시회 관례,민법에 따른다.

**2023 . . .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협회 | (사)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| 업체 | 업체명 :  대표이사 (인) |
| 회장 이일로 (인) |